



신고대상

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



신고·납부기한

2024. 4. 30.(화)까지



납세지

법인부 등기에 따른 본점 또는
주사무소 소재지
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)



신고·납부방법

위택스 전자신고,
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



납기연장지원

- 건설·제조·수출 중소기업
-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

별도 신청없이
3개월 자동연장



기타 자세한 사항은
납세지 관할 00시청 00과에 문의하세요.
☎ 000-000-0000

국세청 홍보대사 김수현·송지호

2024년 4월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·납부의 달



행정안전부

각 자치단체 로고